

대통령령 제 호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캄보디아

제24조제16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캄보디아

부 칙

이 영은 「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 간의 자유무역협정」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24조(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)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(이하 “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”라 한다)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(이하 “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”라 한다)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8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~ ⑮ (생략) <16>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. 1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4조(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8. (현행과 같음) <u>19. 캄보디아</u> ② ~ ⑮ (현행과 같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캄보디아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859